

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5월 2일
- 회부일자 : 2011년 5월 4일

## 3. 제안이유

- 충북개발연구원 제61차 정기이사회(2011.3.18) 개최 결과 연구원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조례명칭을 변경
  - 조례명을 “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
- 조문의 내용 중
  - “충북개발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”를 “충북발전연구원”으로 수정함(제1조)
  - “연구원의”를 “충북발전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”로, “충북개발연구원육성기금”을 “충북발전연구원육성기금”으로 수정함(제2조1항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동기

- 충북개발연구원의 법인명칭이 자원의 소모적 이용을 내포한 「개발」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적 환경 여건에 따라 지속가능 및 더 나아간다는 뜻이 있는 「발전」이라는 충북발전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 하려는 것임

## 나. 개발과 발전의 사전적 의미

- 개발은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하는 것
- 발전이란 더 낮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는 뜻

## 다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충북개발연구원의 기관 명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시대적 환경 여건에 따라 개발에서 발전으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